##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35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이소영·장철민·전용기

김성환 · 김정호 · 박지혜

김한규 • 신정훈 • 박홍배

박상혁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 칭을 각각 '기후인지 결산서'및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변경함(안 제 15조의2제1항제7호의2·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인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인지 결산서 및 기후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 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	류) ①			
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				
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	7의2. <u>기후인지</u>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	②			
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결	2의2. <u>기후인지</u>			
산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⑤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				
른 <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	<u>기후인지</u>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				
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결	- <u>기후인지</u>			
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